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운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32
------	------

발의일자 : 2025. 5. 29.

발 의 자 : 운영희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현재 유용미생물복합기를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3조).
- 공급대상, 생산 및 공급(안 제4조 ~ 제5조).
- 공급제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해당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3) 입법예고 : 2025. 5. 30. ~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텃밭, 도시농업의 토질개선 사업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그 밖에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험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21. 1. 5.>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21. 1. 5.>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사. 자연보호활동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시행 2023. 10. 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90호, 2023. 10. 12., 일부개정]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